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실습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2022.03.31



1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일정 및 진행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일정 (1)

01

실습 전

3-6월

- 실습 오리엔테이션
- 실습기관 결정 및 실습 신청
- 실습 준비이론 교육

02

실습 중

7-8월

- 실습실행: 실습 현장 지도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 신청!

03

실습 후

9-11월

- 사회복지 현장실습 :학교 수업
- 실습 보고회 & 실습 평가회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일정 및 과업 (2)

실습 전

3월 실습 오리엔테이션

- 사회복지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 일시: 2022년 03월 31일 (16:30~17:30)
- 장소: 종합강의동 강당 (종-강당)

4-5월 실습기관 결정 및 실습 신청

- 실습지 선정: 4-5월
- 실습신청 공문 발송: 4-6월 중순까지
- *단, 기관 별 실습생 모집 기간이 상이할 수 있음**

6월 실습 준비이론 교육

- 일정: 6월 17일 (금) 13:00~16:00
- **실습 전 필수 이수**
- 실습에 필요한 기술, 지식에 대한 검토
- 실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한 안내 및 질의 응답



실습 중

7-8월 실습 실행: 실습 현장 지도

- 실습 활동: 7-8월
- 주요 활동 내용
- 실습생들의 실습 활동
- 기관 및 학교의 슈퍼비전 실시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 신청!!!

실습 후

9-11월 사회복지 현장실습: 학교수업

- 일정: 9-11월
- 사회복지 현장실습 1 수업 진행
- 반드시 수강신청 시에 사회복지 현장실습 1 과목을 수강할 것

11월 실습 보고회 & 실습 평가회

- 11/23 (수) 실습 보고회 16:00~18:00
- 11/24 (목) 실습 평가회 16:00~18:00
 - 포트폴리오 시상
 -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
 - 예비 사회복지사 선서식

학과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신청서 서식 (3)

-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http://dsw.daegu.ac.kr>) 에서
 공지 사항 > 서식 자료실 > 2022년 사회복지 실습 서식 자료 > 실습신청서
※ 아래와 같은 실습신청서 다운 받아 공란(빈칸)없이 작성하여 학과 사무실에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실습신청자	성명		학년	
	학교/학과		학번	
	연락처		E-mail	
	주소			
<input type="checkbox"/> ※ 2차 사회복지현장실습인 경우 체크(☑)해 주세요.				
실습기관	기관명		연락처	
	실습기간		FAX	
	기관주소			
개인정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구대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 및 증빙		
	수집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1호, 5호		
	보유·이용 기간	준영구		
	수집·이용 항목	구 분	수집 항목	동의여부
필수항목		- 성명, 학년, 학교/학과, 학번,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거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실습신청시 주의사항 (4)

★ 실습신청서 제출시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에서 인정받을 기관 1개를 선택하여 신청

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와 다르며, 실습 기관이 **확정**된 경우에
공문 발송을 위해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는 신청서.

- 반드시 실습기관과의 상의 및 면접 등을 진행한 후 **확정**된 경우에 실습 신청서를 **학과 메일로 제출**

사회복지학과 메일: 8506310@naver.com

실습신청시 주의사항 (4)

- 실습을 2곳에서 하는 경우 (7, 8월)

- 실습 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2장 제출.

- 반드시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에서 인정 받고자 하는 기관을
학과사무실에 알려주세요.

⇒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에서 인정받지 않는 실습은 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하지만 실습 기관에는 공문을 발송 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필요.

⇒ 실습은 동일한 기간에 여러 기관에서 복수로 진행할 수 없음.

⇒ 실습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학과 사무실에 알림.

실습신청시 주의사항 (4)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실습신청자	성명		학년	
	학교/학과		학번	
	연락처		E-mail	
	주소			
		<input type="checkbox"/> ※ 2차 사회복지현장실습인 경우 체크(☑)해 주세요.		

- 실습 2곳에서 진행하는 경우,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에서 인정받지 않는 실습 및 실습 인정은 전년도에 받았지만 선택적으로 한번 더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 =2차 사회복지 현장실습 체크박스란 작성.
- * 2022년 사회복지 현장실습 신청서 양식으로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신청 (5)

★ 8월 수강 신청 시,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을 반드시 신청할 것!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담당교수가 실습지도교수가 되는 것임.

- 사회복지현장실습1을 수강하여야 실습을 인정 받을 수 있음.
- 그 해 "사회복지현장실습1"을 수강하지 않을 경우, 실습을 하여도 인정 되지 않음.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이수과목과 학과 졸업학점을 잘 숙지하여,
학사관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실습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6)

★ 실습 확인서

- ‘실습확인서’는 학생이 보관하며, 사회복지현장실습1 수업 첫 시간에 담당 지도 교수님께 날인을 받아 보관
- 자격증 신청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하는 서류
PDF, 이미지 파일, 스캔, 팩스, 복사본 x
- 2021.04.15 개정된 실습확인서로 발급

실습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6)

★ 실습 확인서

‘실습 세미나 교수’ 란은 실습 시 기관을 방문하신 교수님이 아닌,
2학기에 수강하는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 교수님의 성함을 기재해야
하므로 공란으로 두었다가 수강신청 이후 기재하도록 함.

- 실습 교육기관 및 세미나 교수, 세미나 란은 비워두고 발급

★ 실습 지도자 평가서

- 실습지도자 평가서는 기관에서 학교로 직접 제출해야 함

실습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6)

2021.04.15. 개정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작성해주세요*

[] 신규발급, [] 재발급 (앞쪽)

실습생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6자리를 기재 바랍니다	
	휴대전화번호		학교명	※ 현재 소속중인 학교명을 기재 바랍니다.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 실습기관 선정 시 부여된 등록번호 기재
	기관 주소	※ 「도로명 주소」로 기입해 주세요		전화번호	
	실습 지도자명	※ 실습생의 실습을 지도한 지도자명 기재	사회복지사자격번호 (취득일자)	제 - 호 (. .)	
실습기간	실습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실습 시간	총 시간 (총 회, 1일 평균 시간)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실습기관과 실습지도자에 의해 기관 실습을 진행하였으며, 상기 실습생이 위와 같이 기관실습을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실습 지도자 : (서명 또는 인) 기관실습 실시기관 : (직인)

2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안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안내 (1)

1) 사회복지사 자격증 1, 2급 공통 이수 기준

-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10개, 선택과목 7개를 각각 이수한 자 = 총 51학점 이수
- ◆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졸업자)

2) 사회복지사 자격증 1급 이수 기준

- ◆ 사회복지사 1급 국가 시험에 응시 후 합격한 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안내 (2)

❖ 필수 이수 과목 10과목/3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사회복지 조사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정책론	사회복지 행정론	사회복지 법제론
사회복지 현장실습	사회복지학개론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과목 이수 안내 (3)

❖ 선택 이수 과목 7과목/21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출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자격제도
Social Worker Certificate

- 자격제도 >
- 등급별 자격기준 >
- 2 **이수과목 안내** >
- 동일교과목 안내 >
- 자격증 신청 제출 서류 등 안내 >

이수과목 안내



- 이수과목 ▾
- 3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 동일과목 심의 안내 ▾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

➔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부칙 제1조 (제73호, 2008.11.5)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이동부정권, 원상복귀, 이원부정권, 지역이원부정권, 여성부정권, 귀족부정권, 산업부정권, 이원상회부정권, 학부상회부정권, 원상

사회복지학과 2020 교과과정 변경 (학년, 명칭)

학년

- 장애인복지론(3학년 2학기)
→ **2학년 1학기**
- 여성복지론 (4학년 1학기)
→ **2학년 2학기**
- 의료사회복지론 (4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 교정복지론 (4학년 1학기)
→ **3학년 2학기**
-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2학년 1학기)
→ **4학년 1학기**
-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3학년 2학기)
→ **4학년 1학기**

명칭

- 사회복지개론 → 사회복지학개론
- 사회복지발달사 → 사회복지역사
- 정신보건사회복지론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과 평가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가족치료 → 가족상담 및 치료
-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 임상사회복지실습 & 세미나 → ***개설 X***
- **사회복지실습2 & 세미나2**

사회복지학과 2020 교과과정 (변경 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공통프레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나눔과 헌신(사랑)			자원봉사론						
지역사회맞춤(빛)						사회복지 현장실습(1)	사회복지 혁신스타트업		
자기주도(자유)			사회문제론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세미나 캡스톤디자인		
사회복지학 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기술론	지역사회 복지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가족상담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역사	가족복지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정책론	학교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윤리와철학	사회서비스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정신건강 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중독과사회복지 실천		
			장애인복지론	사회보장론	의료사회복지론	사회복지상담			
			빈곤론	사회복지영어	사례관리론				

* 빨간색으로 표시된 과목은 1,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필수 이수 과목임*

* 사회복지 현장실습(1)은 여름 실습학생이 듣는 과목이며 사회복지 현장실습(2)는 겨울실습학생이 듣는 과목으로 두 과목중 한 과목만 이수하면 됨*

* 사회복지 현장실습 과목 이수해야만 사회복지 자격증이 발급 가능함*

* 전공학점 66학점, 복수전공은 42학점 이상, 부전공은 21학점 이상*

교과목 명칭변경에 따른 재수강 안내

변경 기준	명칭	점수	학점
2010~2020 이전	사회복지 법제	C+	3
2020 부터	사회복지 법제와 실천	A	3
		점수변경 X (재수강 X)	총 6학점 (중복 이수 0)

교과목 명칭의 변경으로, 2021-1학기부터 교과목 변경되기 전의 교과목은 **재수강이 불가능**하지만, **전공 과목으로 두 과목 모두 이수 가능**함.

※ 단, 사회복지 법제(변경 전) 교과목을 이미 들은 학생은
자격증과목으로 따졌을 때는 꼭 다시 듣지 않아도 됨

사회복지학과 학사 안내

	사회복지학과 학생	부·복수전공학생
타과 동일교과	전공학점으로 인정됨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
전공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지 않아도 됨	반드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함
예시	<p>ex) 지역사회개발복지학과의 [사회복지프로그램개발 및 평가] 과목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 안 됨.</p> <p>(교과목 명이 한 글자라도 틀릴 시 인정 X)</p> <p>ex) 산업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됨.</p>	<p>ex)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3학점이 인정됨.</p> <p>ex) 산업복지학과에서 개설되는 [사회복지실천론]을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음.</p>

[프로그램개발과평가] : 전공선택
[사회복지실천론] : 전공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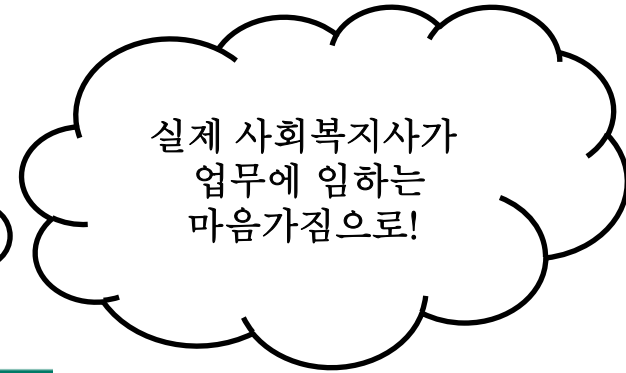
3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과 교과목 구성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목적

: 예비 사회복지사로서의 업무수행 연습



Inform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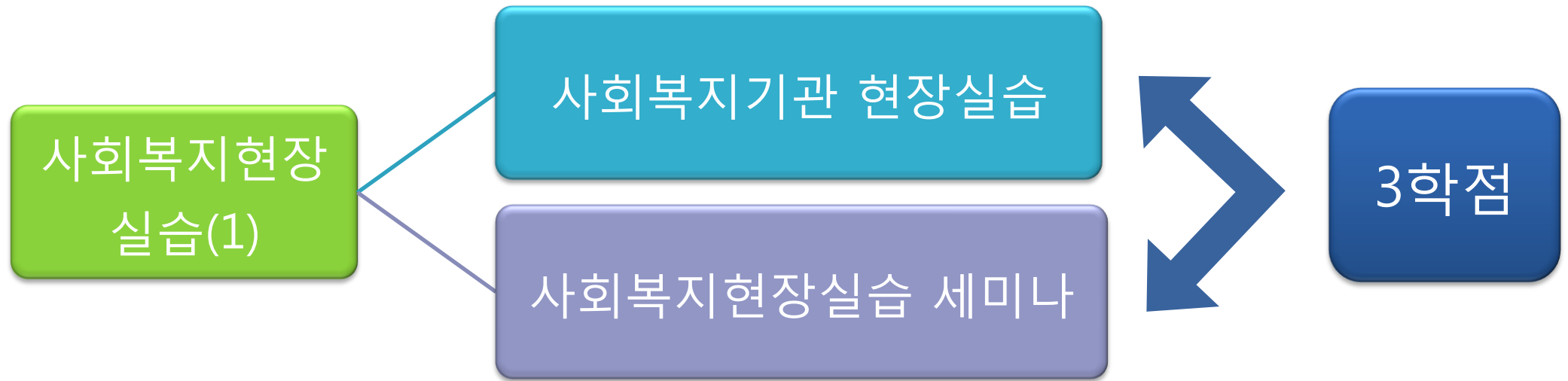
사회복지현장실습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 업무 이해

사회복지 실천 지식 및 기술의 활용 경험

진로 선택 및 취업 준비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교과목 구성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수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1 과목은 현장실습을 진행한 **그 해 2학기** 수강

4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위한 조건과 과업



조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3조 관련

1. 실습시기 및 이수시간

2. 실습기간 선정 시 고려사항

실습시기

- 사회복지학과 3학년 학생 또는 4학년 학생
- 사회복지 현장실습1 과목

개설 학기 직전 방학 (여름방학!)

*** 2021년 실습생부터 사전실습 불인정**



이수시간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일반적으로 주 40시간 x 4주, 총 160시간 이수	주 40시간 x 4주, 총 160시간 이수

* 2020년 입학생부터 160시간 이수 필수 *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조건(1)

법적 실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
-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
할 것
 -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지 실무경험
 - 2)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
지 실무경험
 - 3) 기관 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Or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열린광장>'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 참조

실습기관 선정 시 참고

1.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2022.3.15 기준)

- 해당 게시글 첨부파일에서 단축키(Ctrl+F) 사용하여 실습기관명, 실습기관 관리번호 등 확인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시기관 선정현황은 주1회 가량 업데이트 됩니다.

첨부파일

- ☞ [별지 제2호서식]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확인서.hwp
- ☞ [서식] 사회복지현장실습 실습비 변경신청서.hwp
- ☞ 협회서식_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취소 신청서.hwp
- ☞ 220315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xlsx

2. 실습생 모집 게시판 바로가기 (아래 버튼 클릭)

실습생 모집 게시판 바로가기



인국사회복지사업회
자격관리센터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공간
자격관리센터 입니다.

등급별 자격기준 이수과목 안내 **현장실습 선정기관 현황** 자격증 신청방법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조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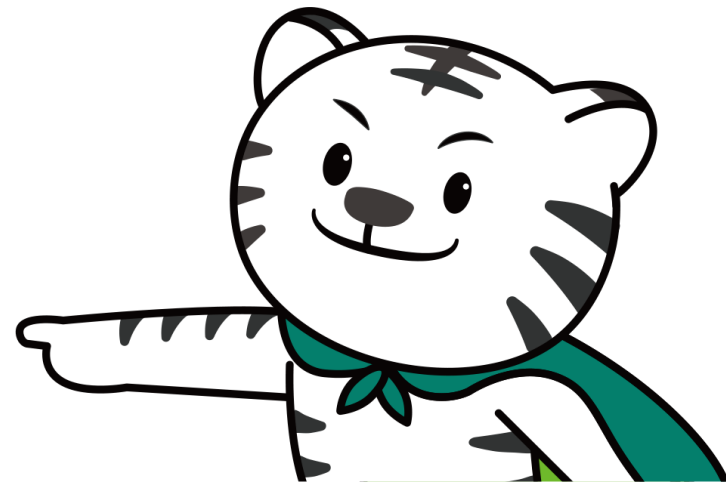
학과 권장 실습기관

학과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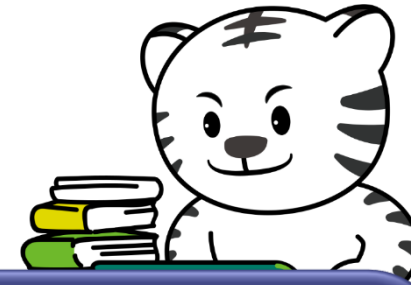
- 4년제 대학 사회복지전공을 통해 학습할 내용이 충분한 기관
- 기 실습자들로부터 실습 지도 우수기관으로 언급된 기관

실습기관 선정 기준

- '1.보건복지부 선정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법적 조건 성립-' 리스트와 '2.학과 추천 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리스트' 을 함께 검토
- 학과 추천리스트에 있는 기관이면서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리스트에 있는 기관에 실습 응모
- 만약, 학과 추천리스트에 없는 기관이면서 보건복지부 선정 기관에서 실습을 하고자 할 경우,
 - 최경숙 교수님과 상의 후 결정
 - ☎ 053-8504578
 - 📱 5349 5230
 - ✉ kschoi33@daegu.ac.kr



실습 기관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의 활용



분야별 기관 유형 검색 시 필요
실습 희망 기관 정해지면 必
보건복지부 선정 실습기관인지 확인

사이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경상북도사회복지협의회	http://www.gbcsw.or.kr	사회복지기관 현황> 사회복지시설·기관 검색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lic.welfare.net	취업정보> 현장실습> 현장실습 등록 & 검색

* '기관 검색'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기관별 홈페이지 방문→게시판 확인

실습기관 선정 시 고려할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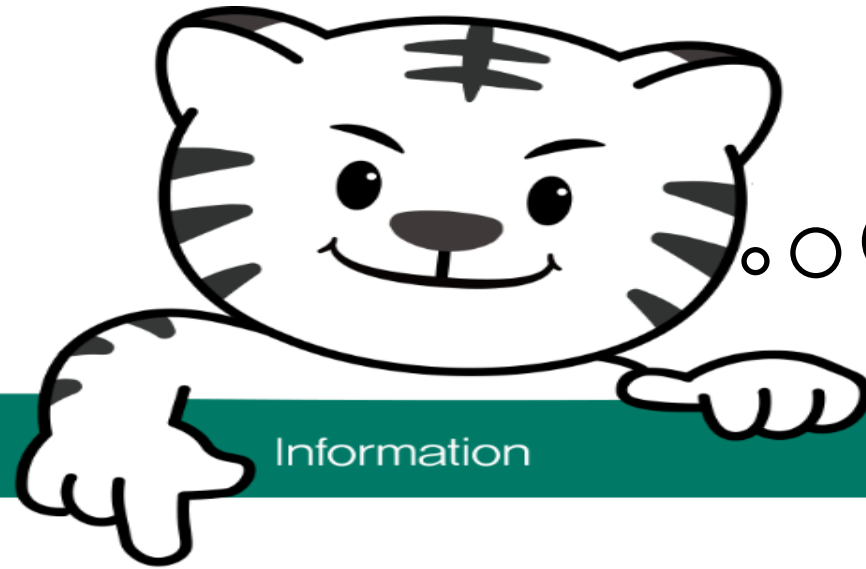
- 실습지도 시스템
- 취업과의 연계
 - ✓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분야에서
임용기준에서 기관 실습을 전제로 하는지
 - ✓ 취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전통, 우수 기관들
-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의
실습생 또는 대학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여부

실습 전 과업

- 실습할 기관 선정되면
 - ✓ ‘실습계획서’ 작성
 - ✓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의 슈퍼비전
 - ✓ 완성된 실습계획서에 따라 실습 진행하며 평가
- 실습 전 준비 교육 수강
 - ✓ 학기말 시험 끝나는 시점에 실시
 - ✓ 6월 17일(금) 13:30~16:00
 - ✓ 2학기 세미나 수업의 일환.
 - ✓ 세미나 수업의 출결로 처리



사회복지현장실습 관련 문의 사항



궁금하거나
상의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노크해 주세요~

Information

방문상담: 사과대 2호관 2208A 호

전화 상담: 053)850-4578

이메일: kschoi33@daegu.ac.kr



Thank You!